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
(김상훈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7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1일

발 의 자 : 김상훈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송도호, 김태호, 우형찬, 정진철,  
이은주, 오중석, 송아량, 성중기,  
추승우, 정지권 의원 (10명)

## 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

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 골자

가.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조)

나.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(안 제5조)

다.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음(안 제6조)

### 3. 참고 사항

#### 가. 관련 법령

-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3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5조 및 제6조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     타 :

#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통안전 봉사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
2. “교통안전 봉사활동”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(이하 “봉사활동”이라 한다)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,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(이하 “봉사단체”라 한다)에 한한다.

제4조(사업비 지원 등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 학교의 등·하교 시간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
2.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
3.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
4.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,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
4.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표창)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(1호),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(2호)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- 다만, 조례안 4조 1항 3호 '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'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로 별도 비용(수당)이 발생하나,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<서울시 예산서(2019)>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2018	2019	세부내역
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	3,550,000	3,253,840	모범운전자 수당 등 40,000천원

- 조례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지원 대상), 제5조(지도 및 감독), 제6조(교육), 제7조(표창)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≒ 75,000천원(연평균 15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5,000천원으로 연평균 15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으로 보고 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을 산정함
  - 2012년 실시한 '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' 비용 25,000천원에는

인건비(강사료, 회의수당 등), 홍보비, 사업진행비, 활동비(교통비,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)가 포함되어 있음

※ 전체사업비 중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자부담은 제외하고 비용추계함

#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 ≙ 75,000천원(연평균 15,000천원)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3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계
		2020	2021	2022	2023	2024	
세입	-	-	-	-	-	-	-
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조례안 제4조제1항 1호, 2호 녹색어머니회 사업비 지원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	소계(b)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□ 총 비용(b-a)	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
○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≙ 75,0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= 15,000천원

= 인건비 + 홍보비 + 사업진행비 + 활동비

= 4,340천원 + 3,337천원 + 6,123천원 + 1,200천원

※ 2012년 실시한 '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' 비용자료를 활용

○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금액	산출내역
계	15,000	
<b>인건비</b> <강사료, 회의참석수당, 단순인건비 등>	4,340	회의참석수당 - 31명×35,000원×4회 = 4,340,000원
<b>홍보비</b> <홍보물, 리플릿 제작 등>	3,337	어깨띠 710개×4,700원 = 3,337,000원
<b>사업진행비</b> <교육장 임차료, 기자재 임차료, 행사진행비 등>	6,123	안전기발 512개×11,000원 = 5,632,000원 장갑 400개×990원 = 396,000원 인쇄비 4회×10,000 = 40,000원 잡비(복사비) 55,000원
<b>활동비</b> <시내교통비,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>	1,200	행사참여 교통비 400명×3,000원 = 1,200,0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당관          남승우  
 정책조사팀장    여차민  
 분석관(주무관)   박종철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c99@seoul.go.kr